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5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관련 규정 개정 및 서울시와 우리 구의 보훈예우 수당 병급 제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시기 조정 및 ‘지역출신’ 용어 삭제
- 나.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자격 완화
- 다. 서울시 보훈수당·마포구 보훈수당간 병급제한규정 삭제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사유 첨부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(20일)

▶ 제출된 의견 없음.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 없음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**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**”을 “**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**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**3개월**”을 “**1개월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**3개월**”을 “**1개월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훈선양사업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</p> <p>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<u>3개월 이상</u>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보훈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<u>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<u>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5조(공훈선양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</u>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1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10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참전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

----- 1개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①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마포구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
- 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
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대상자에게
병급 가능

※추가 소요예산: 46,560천원(97명×60천원×8개월)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김민음 (☎ 3153-8807)